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58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인영·윤건영·김용만

정준호 • 이수진 • 임광현

김성회 · 이정문 · 박상혁

김윤덕 • 박홍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에"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9.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업무
-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가목·나목 및 제6호의2가목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나.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행 혂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 ----국민의 생명과 안 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의 보 호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 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 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 (下役)업무로서 「직업안정 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 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 <신 설> 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
-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9.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공업무
-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및 제6호의2가목 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 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ㆍ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 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u>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u> <u>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u> <u>급사업</u>
 - <u>나.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u> <u>및 혈액공급사업</u>

| <u>5.</u> (생 략) | <u>12.</u> (현행 제5호와 같음) |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